

2026년 제6회 부평국민체육센터 단시간근로자(아쿠아로빅 강사) 공개경쟁채용 재공고
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국민체육센터에서 단시간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5일
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| 모집직종   | 모집분야            | 인원 |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부서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단시간근로자 | 체육강사<br>(아쿠아로빅) | 1명 | 아쿠아로빅 강습<br>(월, 수, 금 12:00~13:00) | 체육사업팀<br>(부평국민체육센터) |

- ※ 최종심사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※ 최종합격자 통보 후에도 제출서류 검증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2. 모집현황 및 근로조건

- 근로장소 : 부평국민체육센터(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소재)
- 근로계약기간 : 2026. 11. 1. ~ 2026. 12. 31. (임용등록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)
-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

| 모집분야            | 모집인원 | 근로일 및 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단가 및 휴게시간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체육강사<br>(아쿠아로빅) | 1명   | 아쿠아로빅 강습<br>(월, 수, 금 12:00 ~ 13:00)<br>※ 1주 15시간 미만 | ◆ 근로단가(월급): 650,000<br>원 |

### 3. 자격요건

| 구분        | 자 격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결격사유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1. 피성년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 <li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li> <li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</li> <li>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</li> </ul> </li> <li>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</li> <li>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</li> <li>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</li> <li>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</li> <li>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</li> </ul> </li> <li>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○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자</li> <li>○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된 자</li> <li>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</li> <li>○ 아동·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</li> </ul> |
| 연 령       |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력/성별/거주지 |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자격사항    | 아쿠아로빅 해당분야 자격증 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우대사항 | ·(우대) 해당분야 경력자<br>·(가점)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관련법령에 따른 가점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※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삭제 <2022. 1. 4.>

바. 삭제 <2022. 1. 4.>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

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

#### 4. 전형절차

○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및 필수사항 검토

- 심사방법 :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**적격 또는 부적격** 판단

○ 2차 면접전형 : 블라인드 면접

- 면접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- 선발기준 :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점수산정 : 면접위원 **채점결과 산술 평균** 실시 (각 면접위원 100점 만점 기준)

○ 최종합격자 결정 : **면접심사 성적순에 따라** 채용예정 인원수 만큼 최종 합격자 결정 (1배수)

※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면접위원별 평가항목 중 ‘중’, 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자

③ 경력기간이 많은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※ 최종심사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(전체 응시자 모두 면접점수 평균 60점이하)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최종합격자 통보 후에도 제출서류 검증,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예비합격자 선정 :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함 (평정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후 면접 점수 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가합격자 임용 가능)

※ 예비합격자 인원은 채용 인원의 2배수이며,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

#### 5. 전형일정

○ 채용공고: 2026. 10. 15.(목) ~ 2026. 10. 22.(목), 7일간(초일 불산입, 공휴일 포함)

○ 원서접수: 2026. 10. 16.(금) 09:00 ~ 2026. 10. 22.(목) 18:00까지

○ 서류합격자 발표: 2026. 10. 23.(금) ※ 홈페이지 공지

○ 면접심사: 2026. 10. 26.(월) 14:00 예정

○ 면접장소: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2층 강의실 예정 ※ 면접심사 일정 및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10. 27.(화) 예정 ※ 홈페이지 공지

○ 임용등록기간: 2026. 10. 28.(수)

○ 범죄조회기간(성범죄, 아동학대 등) : 2026. 10. 29.(목) ~ 10. 30.(금)

○ 임용예정일: 2026. 11. 1. 예정 (임용등록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)

## 6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전자우편([메일주소: recruit\\_gym@bpss.or.kr](mailto:recruit_gym@bpss.or.kr))
- 방문접수 :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296번길 37 부평국민체육센터 2층 사무실
- ※ 토, 일요일, 공휴일 및 평일 중식시간(12:00 ~ 13:00) 방문접수 불가

### ★ 전자우편 접수시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

1. 제출날짜, 동의란 체크 등 누락된 부분이 없게 충분한 검토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2. 반드시 \*자필서명 또는 도장 인장하여 스캔본(pdf)으로 제출하셔야 서류전형 접수됩니다.  
※ 출력 후 서명 또는 도장 인장이 흐리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합니다.  
※ 공단에서 지정한 제출 양식이 아닌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하거나, 지정된 파일 형식(PDF)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처리됩니다. \*불가 파일 형식의 예 : 사진파일(JPG, PNG) 또는 이미지 파일 등
3. 메일 발송시 하나의 파일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\_홍길동 수영강사 지원)

### ○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※ 홈페이지에 첨부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제출
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- 관련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

## 7. 응시자 유의사항
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, 연령, 출신지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응시원서 등 작성 시 기재착오, 내용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

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-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·추가 보완 등이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·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반환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그 외에는 안전하게 폐기합니다.

·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, **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, 구인자(공단)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)하게 됩니다. 채용서류의 **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까지**이며, 보관기간동안 **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**합니다.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자는 재학 또는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일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채용포기자로 간주되어 합격은 자동 취소됩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- 기타 공고문 상 표기되지 않은 채용 관련 사항은 공단 **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관리규정**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체육사업팀(032-262-92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접수일자 |
| 청구인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| 수험번호 |
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
| 반환장소<br>(주소와 다른<br>경우 기재) |    |      |
| 반환청구서류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 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